

해산신고서

[] 조합 [] 연합회 [] 전국연합회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청산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장 소재지	
신고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3조제2항, 제69조 또는 제8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1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신고인 (청산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